【논 문】

‘불령선인’에서 ‘개척의 전사’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재편—

조정우**

차 례

Ⅰ. 들어가며: 통제의 국가, 만주국
Ⅱ. 1936년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성립: ‘억제-집결-방임’의 3원칙
Ⅲ. 관동군의 만주이민정책 재편성: 1938년 12월‘이민근본국책결정(안)’
Ⅳ. 개척민으로서의 조선농민:‘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과 조선대박람회
Ⅴ. 나오며: 불령선인에서 개척전사로

국문초록

이 글은 전쟁이라는 국면에서 조선인 만주 이민자들이 제국을 위한 ‘개척의 전사’로 표상되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만주의 조선인들은 제국의 국방에 위협이 되는 잠재적 불령선인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가 성립하면서 만주의 개발과 오족협화에 공헌하는 개척민으로 격상되었다. 이 개척민 표상의 등장을 해명하기 위해 관동군이 제출한 이민정책 구상의 변용을 추적하였다. 특히 이민정책의 재편을 둘러싸고 벌어진 조선-일본-만주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방침의 변용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개척의 전사’라는 프로파간다의 이면에는 철저한 제국 본위의 정치적 목적이 관철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 주제어: 중일전쟁, 불령선인, 개척, 개척 전사, 오족협화, 만주이민, 조선대박람회

* 이 연구결과물은 2020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www.kci.go.kr

Ⅰ. 들어가며: 통제의 국가, 만주국

이 글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한 조선인 만주이민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적어도 18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주의 흐름은 시기와 국면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 근대 국가의 영토화가 급진전되면서 조선인의 월경 행위는 관련 국가들의 중대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 특히 조선이 일본에 의해 식민화되면서 만주를 드나드는 조선인의 존재는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제정치의 문제로 비화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 관동군은 1932년 만주 일대에 인공국가로서 '만주국'을 건국하였다. 만주국은 일본의 공식 식민지가 아니라 법적 독립국으로서의 국가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일본제국의 중요한 일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만주사변 발발과 만주국의 건국으로 만주 지역이 일본제국의 세력권 하에 편입되자,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조선인들은 청조 시대부터 만주로 이주하여 상당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또 식민화 이후에도 시기별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중국·러시아·일본 세력의 교착이라는 만주 특유의 정치적 조건 속에서 일상의 생계를 꾸려가고 또 일부는 맹렬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주국 건국은 이 교착 상태가 주는 틈새를 제거해 버렸다.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오던 조선총독부는 만주사변 직후 총독부 독자의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을 입안하여, 만주 지역 조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전인 192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총독부는 만주 소재 일본총영사관과 조선인민회, 또 민영회사인 동아권업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만조선인 문제에 개입해 왔었다. 하지만 만주국의 건국은 조선총독부에 더 이상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준 셈이었다.

www.kci.go.kr

소위 '한인 이주사' 혹은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이 문제적인 것은 이민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대해 식민국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개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는 고난과 수난의 역사로서 종종 기록되고 기억되는데, 1930년대 조선인 만주 이민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서 전개되었다는 돌출적인 역사를 보여준다. 학계 일각에서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인 것은, 이 1930년대 조선인 만주이민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상에 손쉽게 포함되지 않는 '정책이민'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주사변 직후 조선총독부가 만주이민을 정책으로 추진한 목적은 무엇이며, 또 그 역사적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여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에 연구가 집중되었다.[1]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성격을 '통제'라는 용어로 규정해 왔다.[2]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사회정책으로서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지원한다고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민자의 규모를 국가가 정하고, 이민지도 지정하며, 또 이민자를 선별하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그 정책의 실상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통국가이든 근대국가이든 국가권력은 언제나 인구의 이동을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관리하려 했기 때문에, 이민을 통제하는 것을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만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게다가 1930년대 만주국

---

1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민정책 수립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유원숙, 1995, 「1930년대 日帝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 『釜大史學』 19; 김기훈, 2002, 「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아시아문화』 18; 임성모, 2009, 「만주 농업이민정책을 둘러싼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 『일본역사연구』 29; 정안기, 2011,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 『동북아역사논총』 31; 조정우, 2014,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사회와 역사』 103.

2 김기훈, 위의 논문, 2002; 金永哲, 2012, 『「滿洲國」期における朝鮮人滿洲移民政策』, 京都: 昭和堂. 두 연구는 시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1930년대 후반 만주이민정책의 기본 성격을 통제로 파악하고 있다. 金永哲은 통제를 전제로 하되 통제의 시기별 차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www.kci.go.kr

은 강력한 국가주도의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개입 행위를 '통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만주국 전반에 걸쳐 각 부문마다 통제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요 경제정책,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통제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개입하였던 것이다.

'통제'라는 이름의 국가 개입은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일전쟁 발발을 기준으로 1932-1937년을 '전기 만주국', 1938-1945년을 '후기 만주국'이라 구분하면,[3] 후기 만주국은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국가 내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통제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주국의 이민정책을 통제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4] 따라서 1930년대 조선인 만주이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동군이 사용한 역사적 용어로서의 '통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통제의 성격을 분석적으로 해체하여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5]

이 글에서는 전시체제 하 조선인 만주이민의 성격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이민정책을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만주국(특히 관동군)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관동군이 만주로의 이민에 대한 통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국면 속에서 조선인 이민자들이 '개척민'으로 표상되는 과정과 논리에 맞춰질 것이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 초기 조선인 만주이민이 가졌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3 이동진, 2016, 「[서평] 국가, 문화를 만나다: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한석정 저」, 『만주연구』 제22집.

4 유원숙은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 만주국 시기를 이민통제기로, 후기 만주국 시기를 집단계획이민기로 나누기도 하였다(유원숙, 앞의 논문, 1995).

5 이러한 접근법은 후기 만주국의 다른 정책 영역을 분석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후기 만주국, 즉 전시체제로 갈수록 '통제'라는 용어는 더욱 남발되었기 때문이다.

Ⅱ. 1936년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성립 : ‘억제-집결-방임’의 3원칙

전시체제 속에서 진행된 만주이민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이민정책이 어떻게 입안되었고 실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입안과 구상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주요 지점들만 짚어 보도록 하겠다.[6]

만주사변 발발 직후인 1931년 12월 조선총독부는 만주의 일본제국 편입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조선인 만주이민을 총독부의 정책으로 입안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만주이민을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조선의 농촌과잉인구를 만주로 배출하여 조선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경감시키는 데 있었다. 조선 농촌에 누증된 과잉인구는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실업자와 빈곤층으로 저락되고 있었고, 이들은 항일 공산주의 운동의 저수지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총독부는 조선통치의 안정을 위해 농촌과잉인구 압력을 해소해야만 했는데, 만주로의 인구 배출은 총독부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해결책으로 보였던 것이다.[7]

이에 조선총독부는 매년 1만호의 조선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키되, 이들에게 이주비 지원, 토지구입 자금 대출, 영농기술 보급, 학교·병원 등 생활시설 보급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민정책을 구상하였다. 과잉인구 배출을 통해 조선 내부 통치를 안정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불령선인’의 온상인 재만조선인 사회를 포섭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

6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것(김기훈, 앞의 논문, 2002; 임성모, 앞의 논문, 2009; 조정우, 앞의 논문, 2014). 이하 정책 구상과 성립에 대한 설명도 이 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 농촌과잉인구를 만주로 배출하여 인구 압력을 완화시킨다는 발상은 1920년대부터 일본에서 학계와 언론에서 공공연히 논의되었다. 특히 1924년 미국에서 ‘배일이민법(排日移民法)’이 제정되어 미국 본토로의 일본인 이민이 좌절되면서 그 대안지로서 만주가 더욱 부각되었다.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었다.

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총독부의 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일본본토에서도 조선과 거의 동시에, 또 농촌과잉인구 배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일본인 만주농업이민정책이 추진되면서 조선인 만주이민정책과 일본인 만주이민정책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부터 일본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만주농업이민을 구상했던 일본의 농본주의자-농정학자들은 만주국 건국을 기회로 자신들의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전방위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였다. 주창자이자 실천가인 농본주의자 가토 간지(加藤完治)의 이름을 따 '가토 그룹'으로 불리던 이들은 일본농민의 만주이민이야말로 농촌문제 해결의 시급한 방안이라 하며 일본 정계와 관계, 그리고 군부를 설득하였다.

이 가토 그룹이 보기에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조선인 만주농업이민정책은 이민용지의 배분, 이민자금의 공급 등 이민정책의 핵심 사안에서 일본인 농업이민정책과 정확히 맞부딪히는 문제였다. 게다가 조선농민들은 이미 만주에 정착한 농민이 많았기 때문에, 생경한 만주 땅에 홀로 정착해야 하는 일본농민 보다 이주정착에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만약 조선농민과 일본농민이 똑같이 정책으로 지원을 받아 이주한다 해도 서로 경쟁 관계에 들어간다면 일본인 이민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그래서 가토 그룹은 특히 만주의 관동군을 설득해 조선총독부의 정책 추진을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가토 그룹이 강조한 것은 조선총독부의 이민정책은 '항일운동의 책원지'인 조선농민을 더욱 증가시켜 국방과 치안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만주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우수한' 일본농민들이 인구 구성 상 일정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데 조선농민은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논리였다. 또 농경에 적합한 숙전(熟田)은 이미 조선인들이 확보하고 있어 일본농민의 이민용지를 확보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입안 초기 조선총독부의 계획에 호의적이었던 관동군은 가토 그룹의 주장

www.kci.go.kr

을 수용하여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을 거부해 버렸다. 만주이민정책은 어디까지나 일본인 농업이민정책을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34년 3월 일본인 '시험이민단'을 항일무장단이 습격하여 이민단원 일부가 사살된 '토룡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본농민의 만주 이민이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관동군에서는 같은 해 5월 '新京이민회의'를 소집하여 만주이민정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회의를 조선인 이민정책 재추진의 기회로 삼아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총독부가 각별히 강조한 것은 조선인의 만주이민이 일본제국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였다. 즉 초기 구상에서는 조선통치에의 필요성만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제국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조선총독부 주장의 주요 논거 중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조선인의 만주이민정책은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저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이었다. 조선의 농촌과잉인구가 일본본토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일본의 실업과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 이동의 흐름을 만주로 돌린다면 일본본토의 사회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즉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 구상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본 정계와 관계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려했던 것이다.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재만조선인에 대한 총독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약속하여 관동군을 설득하였다. 여기에 조선군사령부에서도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현실적으로 제어하기 곤란하며 만약 억지로 막을 경우 조선통치의 불안이 가중되며, 이는 곧 만주 국방의 위협 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라 하며, 조선총독부의 계획이 군사적·치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8]

결국 1936년 여름 조선총독부-일본정부-관동군 3자의 타협으로 조선인

8 朝鮮軍參謀長, 1936.09,「滿洲國二対スル朝鮮人移民二関スル件」(JACAR Ref.C01003189500). 이 문서에는 이민정책 시행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관동군 간의 각서, 이민사무처리위원회 관련 규정, 조선인 이민의 방향을 제시한 '선농취급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만주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본 내각은 만주 이민정책이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우가키 조선총독의 설득에 대해 동의하며, 따라서 총독부의 계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주의 관동군은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본농민의 만주 이주가 최선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방침으로 협의할 것을 총독부에 요구하였다: 조선인이 정책이민을 통해 신규로 만주로 이주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 기주 재만조선인은 관동군이 지정한 구역으로 집결시킬 것인데, 다만 조선의 인구압력 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은 묵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바로 1936년 8월 관동군사령부가 작성한 '선농취급요령'이다.

「만주국에서의 鮮農 취급 요령」 1936년 8월24일 관동군사령부[9]

1. 全滿의 농경지를 조선농민 취급상의 견지에서 다음의 세 지구로 구분한다.
   (1) 조선농민의 입식을 지도원조할 지구
   (2) 국방상 조선농민을 입식시키지 않을 지구
   (3) 기타 지구
2. 제1항 제1호의 지구에 대한 선농의 취급은 다음의 요령에 의할 것.
   (1) 鮮拓의 이 지구에서의 선농용지 취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조할 것.
   (2) 선척으로 하여금 타 지구의 조선농민을 본 지구로 유도하도록 할 것.
3. 제1항 제2호의 지구에 대한 조선농민의 취급은 다음의 요령에 의할 것.
   (1) 조선농민 이식을 위해 신규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입식시키지 않도록 할 것.
   (2) 이미 입식된 조선농민에 대해서는 鮮拓 등에서 최대한 빨리 다른 지구로 이식집결시킬 것.
4. 제1항 제3호의 지구에 대한 선농의 취급은 다음의 요령에 의할 것.
   (1) 내지인 이민의 입식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인의 이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입식된 조선농민에 대해서는 조건부 短期更改의 소작계약을 하도록 하여 점차 타 지구로 집결시키도록 할 것.
   (2) 前號의 지구 이외의 지구에 대한 이주선농의 취급은 되도록 지역마다 집결시키고 또 선주민과의 융합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당한 통제를 가할 것.

비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지구 구분은 附圖에 의한다.
만주국군 둔전병이 된 자의 취급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조선총독부와 관동군과의 관계에 있어 협의가 진행된 1936년 여름은 그

9 關東軍司令部, 1936.8, 「滿州国二於ける鮮農取扱要領」(위의 朝鮮軍參謀長, 1936.09의 문서에 첨부), 밑줄은 필자.

www.kci.go.kr

해 봄에 있었던 2.26쿠데타로 군부가 일본제국의 실권을 장악한 시점이었다. 또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이민 수입국인 만주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로서는 만주 관동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관동군과 조선총독부는 1936년 9월 최종 각서를 교환하였는데, 그 중 1항과 2항은 조선인 집결사업과 신규 송출 억제를 명확히 한 조항이다.

「만주국내 조선인 이민 실시에 관한 조선총독부와 관동군과의 각서」(1936년 9월)

1. 만선척식고빈유한공사[만선척식회사]는 「만주국에서의 선농취급 요령」에 기초하여 조선인의 통제 및 안정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선총독부와 만선척식고빈유한공사는 만주국에 대해 조선내로부터 적극적으로 입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와 밑줄은 필자)

1936년 8월·9월에 결정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은 다음의 ‘억제-집결-방임’의 세 원칙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0]

가. 조선인의 신규 정책이민은 ‘억제’한다.

나. 기주 재만조선인은 관동군 지정 구역으로 ‘집결’시킨다.

다. 조선의 인구압력 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은 ‘방임’한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은 1931년 12월에 입안되어 1936년 9월 시행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정책 입안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민정책의 핵심인 신규 이민의 송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10 關東軍司令部, 1936.8, 「滿州国二於ける鮮農取扱要領」; 朝鮮總督府·關東軍司令部, 1939.09, 「滿洲國內朝鮮人移民實施ニ關シ朝鮮總督府ト關東軍トノ覺書」(이상 앞의 朝鮮軍參謀長, 1936.09 문서에 첨부). 억제-집결-방임의 3원칙으로 합의되는 보다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조정우의 앞의 논문(2014)을 참조할 것.

www.kci.go.kr

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본토와 만주측에서는 조선인의 만주 정책 이민은 만주국방과 만주개발의 핵심 분자인 일본인 이민정책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은 이민송출이라는 핵심 사업이 누락된 채 시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신문지상에는 총독부의 이민정책이 시작된다는 기사가 떠들썩하게 실렸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총독부가 이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사업의 정체는 무엇일까.

조선총독부-관동군 간의 합의 각서에 의거하여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총독부는 정책의 시행사이자 대행사로 선만척식주식회사(鮮滿拓殖株式會社)를 1936년 9월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공칭자본금 2,000만 엔의 대형국책회사로 본사를 경성에 두었고, 초대 총재로 관동군 중장 출신 예비역 니노미야(二宮治重)가 임명되었다. 선만척식주식회사는 만주 현지 자회사로 만선척식주식회사(滿鮮拓殖株式會社)를 설립했는데, 선만척식주식회사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자본·자금 조달 업무를 전담했고 만선척식주식회사는 이 자금을 가지고 만주에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회사 만선척식주식회사는 1920년대 만주에서 '안전농촌'을 운영하던 동아권업주식회사의 조직과 자산을 인수한 회사였다.

현지 시행사로서 만선척식주식회사가 사업이 실제 시작된 1937년에 수행한 것은 바로 재만 조선농민에 대한 집결사업이었다.[11] 조선인 이민정책 실시 결정을 목전에 둔 1936년 8월 관동군사령부가 작성·하달한 위의 「만주국에서의 鮮農 취급요령」의 제1항은 만주의 농경지를 '국방상 조선농민을 입식시키지 않을 지구'와 '조선농민의 입식을 지도원조할 지구'로 나누고, 제2항에서는 선만척식회사는 조선인 지정 지구에 대한 용지 취득을 담당하면서 그 바깥에 있는 조선농민들을 지정 지구로 유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조선농민이 입식이 금지된 지구, 즉 일본인 입식 예정지구에 있는 기주 조선농민들은 선만척식회사가 최대한 빨리 조선인 지정 지구로 이주시켜야

11 선만·만선척식회사는 1936년 9월에 설립되었지만 설립년도에는 준비 업무만 하고 실제 사업은 1937년부터 시작하였다.

www.kci.go.kr

한다고 하였다.

관동군은 1936년 10월 또 다른 「만주국에서의 鮮農 취급요령」에서 조선인 입식 지역으로 간도성과 동변도의 23개현을 지정하여, 소련-만주 국경 일대에 산재한 조선농민들을 지정 지구로 이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이듬해인 1937년 4월 「선농 이주통제 및 안정실시 요령」을 제정하여 조선인 집결 지구로 17현을 추가 지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23개 현으로는 조선농민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12] 아래 표는 만선척식회사가 실제로 집행한 조선인 집결 사업의 내역인데, 사업 개시 첫해인 1937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만선척식회사의 조선인 집결 사업 내역(1937~40년)

新京 지점 관할 :	吉林省, 濱江省, 龍江省, 興安南省, 興安東省 총 919호, 3,762명. 1937년도에 집결 집중.
奉天 지점 관할 :	錦州省, 奉天省, 通化省 총 1,213호, 5,666명. 1937년도에 집결 집중.
延吉 지점 관할 :	間島省 총 88호, 389명. 1937년도에 집결 집중.
牡丹江 지점 관할:	牡丹江省 총 608호, 2,851명. 1937~40년까지 시행.

출처: 高見成 編, 1941, 『鮮滿·滿鮮拓植株式会社五年史』, 83~86쪽을 필자가 재정리.

이처럼 영업 첫해인 1937년 만선척식회사는 만주 각지에 산재한 조선농민들을 관동군이 지정한 구역에 집결시키는 사업을 '조선인 이민정책'으로 집중 시행하였다. 관동군과 조선총독부의 협약대로 신규 송출 사업은 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사회정책으로 내세웠던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은 이민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이주 정책으로 변용되었던 것이다. 조선농민들이 터를 잡고 있던 농토를 비우고, 그곳에 일본인 이민단을 입식하는 것이 1937년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내용이었다.

12 김윤미, 2010, 「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17호, 17~18쪽.

www.kci.go.kr

Ⅲ. 관동군의 만주이민정책 재편성 : 1938년 12월 '이민근본국책결정(안)'

1937년 7월 발발한 '노구교 사건'은 조기에 승기를 잡아 단기결전으로 끝내려 했던 일본의 바램과 장담과는 달리 1938년에 들어서도 종결되지 않고 결국 '중일전쟁'이라는 장기전으로 비화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5월 시행하여 전시체제 돌입을 법제화하였다. 이처럼 중국과의 장기전이 명확해지자 관동군은 1938년 여름 만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사무처리위원회'에 만주국의 이민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관동군이 이민정책을 재편하려 한 것은 전시체제 하에서 식량과 노동력의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1. 조선인 이민정책의 변경: 신규입식 확대, 입식제한 구역 폐지

조선인 집결사업이 막 시작되던 1937년 4월 관동군은 「선농 이주통제 및 안정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조선인 만주이민의 실시 방안을 지시한 바 있었다. 이는 조선인 신규입식은 매년 '1만호 이내'로 하는데, 정책이민은 하지 않고 자발적 이주 희망자 중 조선총독부가 발급한 이주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는 것을 지침으로 하였다. 가고자 하는 것은 자유로이, 즉 '자유이민'을 억지로 막지는 않지만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이 '방임'의 내용이었던 것이다.[13]

문제는 이주증명서의 발급 대상이었다. 만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만주에 연고를 증명해야만 총독부로부터 이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만선척식회사가 기주 재만조선인들을 특정 구역으로 집결시키고 있었기 때

13 '자유이민'은 선만-만척척식회사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않는 유형의 이민을 가리켰다. 조선총독부는 만주이민의 유형을 '집단이민'과 '자유이민'으로 나누었는데, 집단이민은 총독부와 척식회사의 지원과 관리를 받은 '정책이민'이었다. 하지만 '자유이민'은 총독부로부터 이주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할 뿐 다른 지원없이 이주를 하는 방식이었다. 관동군은 조선군사령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 자유이민에 대해서는 만주 입경(入境)을 '방임'하였다.

문에 연고 증명을 통해 이주증명서를 소지한 소위 ‘자유이민’자들도 연고자가 있는 바로 그 집결 구역으로만 들어가게 되었다. 만주 이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조선 농촌과잉인구의 만주 배출을 ‘자유이민’ 방식으로 일정부분 허용하면서도 특정 구역으로 이민자들을 몰아넣은 방식을 구사함으로써, 관동군은 일본인 이민용지를 확보하고 또 조선인이 치안의 위험요소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38년 7월 관동군이 이민사무처리위원회에 지시한 것은 바로 이 ‘집결-방임’ 방침을 대폭 수정하고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적극화하라는 것이었다. 관동군의 방침 변경은 만주의 경제개발과 국방에 있어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전시체제 발동으로 군수생산이 증대하고 또 전선으로의 병력동원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제국 전체 수준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주요 공업시설과 병력자원이 집중되어 있던 일본은 물론이고, 1937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던 만주국에서도 노동력 확보가 국가적 현안이 되었다.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할 식량 생산에 있어 노동력 부족은 만주국의 국방과 경제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농업이민은 계획 호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부진하였다.

일본의 경우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의 미가와 농지가가 상승하면서 일본 농민의 수입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만주라는 춥고 생경하고 비적(匪賊)이 출몰한다는 위험한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는데, 일본 농업의 활성화로 농가수입이 호전됨에 따라 일본농민들에게 만주 이주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인 일이 되지 못하였다. 또 농지를 갖지 못한 농촌인구들은 전시호황 속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업시설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본토의 사람들이 만주로 갈 유인은 더욱 줄어들었다. 일본정부는 결국 1938년 ‘만주개척청년의용대’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

www.kci.go.kr

을 만주로 동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14]

조선농민들은 재만조선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에 비해 만주에 익숙했지만, 전시체제 하에서 이주의 방향은 만주가 아니라 일본 본토를 향했다. 만주로의 농업이민 보다 일본으로의 노동이민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군수생산의 급증으로 일본 본토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벌충할 수단으로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 이미 1937년 하반기부터 일본 본토에서는 광산업계의 주도로 조선인 노동력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15]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도 1938년의 시점에 일본정부에 조선인 '내지도항(內地渡航)'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조선인을 산업노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나미 총독은 조선인 노동력이야말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며 내지도항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말한 것이다. 결국 1938년 말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내지도항에 대한 감독을 크게 완화하고 그 수속도 간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16]

만주 관동군이 조선농민의 만주이주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노동력 수급에 있어 만주국 인구 구성 상의 곤란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동군사령부에서는 1938년 7월 새로운 조선인 이민정책을 제시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수정) 및 선농취급요강」을 작성하였다.[17] 이는 1937년의 「선농취급요령」과 「선농 이주통제 및 안정실시 요령」을 폐지한 것이다.

새로 마련된 「재만조선인지도요강」은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중요한 구성분자임을 진실로 자각하도록 하여 스스로 그 소질을 향상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과 함께, 기꺼이 만주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여 만주국의 발전에

14 김윤미, 앞의 논문, 2010, 22쪽.

15 『朝日新聞 南鮮版』, 1937년 10월 10일자.

16 『朝日新聞 西北鮮版』, 1938년 12월 20일자.

17 關東軍司令部, 1938.07, 「在滿朝鮮人指導要綱(修正)並鮮農取扱要綱に関する件」(JACAR Ref.C01003367300)

www.kci.go.kr

공헌하도록 하여, 타민족과 협화융합하여 균형의 조건으로 각반의 방면에서 견실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하여, 재만조선인이 만주국민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요 조선인 단체를 만주제국협화회에 통합시키고(1항), 재만조선인에 대한 물질적 보조를 실시하며(2항), 재만조선인을 실력에 따라 다른 민족과 동등한 자격으로 공무직에 임명하며(4항), 재만조선인에도 앞으로 점차 국방의 의무를 부가한다(6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 「재만조선인지도요강」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농민 이주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을 제시한 것이 「선농취급요강」이다. 이 요강 중 세부 지침을 설명한 ‘요령’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농취급요강」, 1938.07. 관동군사령부

요령

1. 신규입식호수는 일단 매년 대략 1만호로 한다.
   이 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민사무처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2. 만주국정부는 전년도 적절한 시기까지 지역 및 업종별 입식호수를 결정하여 조선총독부에 통지한다.
3. 조선총독부는 전호의 통치에 따라 이주희망 농민에 대해 이주지역별 입식자를 결정하여 그에게 이주증명서를 발급한다.
4. 조선총독부는 이주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입만(入滿)하도록 적의한 조치를 강구한다.
5. 만주국정부는 입만 선농의 통제와 보조를 위해 만주국경의 필요한 곳에 척정변사처(拓政辯事處)를 설치한다.
6. 이민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소질에 중점을 두고 입만 후 만주국의 구성분자로서 유감없음을 기하고 필요에 따라 선만 양자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7. 신규입식자는 토지의 정황 등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지역에 집단입식 시키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적의한 방법에 의해 집합 또는 분산입식 시키도록 한다.
8. 입식자는 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한 반드시 곧 자작농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사정에 따라 소작농으로 입식안정토록 한다.
9. 신규입식지역은 국경지대 등 특별히 정한 지역 이외로 하며 매년 구체적 입식 구역은 정부에서 선만척식, 금융회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0. 신규입식자의 토지 선정과 그 입식에 관해서는 협화회, 지방행정기관, 선만척식, 금융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지도원조한다.
    집단입식의 용지는 미간지를 원칙으로 하고 정비요령은 내지인 이민용지의 경우에 준한다.
11. 집합 또는 분산입식지에서는 원주민 경작지와의 조정에 관해 고려한다.
12. 기주 선농으로 영농의 기초가 확정되지 않고 부동(浮動)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의안정 조치를 강구한다.

---

www.kci.go.kr

비고

1. 국경지대 등 특별히 정한 지역에 기주하는 선농의 처지에 관해서는 일반 원주민의 예에 따른다.
2. 본 요강에 대응하여 선만척식, 금융회, 농무계 등의 관계를 조정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할 방도를 강구한다.
   그에 기초하여 요강은 별도로 정한다.
3. 종래의 '선농취급요령'과 '선농이주통제 및 안정실시요령' 및 '동 세목'은 폐지한다.

「선농취급요강」에서 핵심적인 것은 조선인 이민호수의 확대와 이주 제한 지역의 철폐, 이 두 가지였다. 「선농취급요강」 '요령'의 제1항은 '신규입식호수는 일단 매년 대략 1만호로 한다'고 하여 1937년의 '1만호 이내로 한다'의 방침을 크게 바꾸었다. '1만호 이내'라 할 경우 입식호수가 1만호에 크게 못 미쳐도 협의를 어긴 게 아니었다.[18] 100호이든, 1000호이든, 9900호이든 또 심지어 단 1호도 입식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매년 '1만호로 한다'고 하는 것은 1만호의 조선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었다. 또 제2항은 만주국은 이주 시행 전년도에 조선인 이주 지역과 호수, 종류를 결정하여 조선총독부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고 하여, 총독부가 정책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3항은 조선총독부는 이주를 희망하는 농민에 대해 이주 지역을 정하여 이주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여 연고 증명의 의무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조선인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미개간지에 자작농으로 육성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하였다.

이주지에 대해서는 제9항에 '신규입식지역은 국경지대 등 특별히 정한 지역 이외로 한다'고 하여 군사 상의 지역 이외에는 이주 제한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이주 대상 지역의 선정은 만주국정부, 선만척식회사, 조선인금융회 등의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관동군이 이주 구역을 지정했던 종래의 방식을 철회하였다. 1938년 7월의 이 「선농취급요강」은 소련-만주 국경 일대의 군사작전 구역을 제외하고 만주국-조선총독부-재만조선인단체 간의 협의에 의해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매년 1만호 씩 조선인

18 김기훈, 앞의 논문, 2002, 75쪽; 김윤미, 앞의 논문, 2010, 24쪽.

www.kci.go.kr

신규이민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표방한 것이었다. 이로써 1936·37년의 ‘억제-집결-방임’의 3원칙은 폐기되고,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은 적극적 수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 1938년 12월 ‘이민근본국책결정(안)’과 제국의회 심의 보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38년은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어 일본제국이 전시체제로 돌입한 해이다. 만주 이민사에 있어서도 1938년은 일본인 ‘만몽개척청년의용군’이 제도화되고, 조선 농민의 이주가 적극화되는 등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총력전체제가 선포된 것과 거의 동시에 조선총독부도 조선인 이민정책에 있어 변화를 감지하고, 조선인 이민회사인 선만척식회사를 일본인 이민회사인 만주척식공사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19]

독자적으로 편성할 예산을 갖지 못하고 재정을 일본 본국에 의존했던 조선총독부가 만주국와 일본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단독으로 운영해야 했던 선만척식회사는 1937년에 이미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여 관동군이 이민정책을 전환하지 않았다면, 사실 선만척식회사와 조선인 이민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중일전쟁으로 인해 만주이민을 둘러싼 일본-조선-만주 간의 역학 구도가 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만주국은 인구 밀도가 낮고 노동력의 수준도 떨어져 전시동원의 인적 자원의 분배에 있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반대로 1930년대 전반기, 즉 전기 만주국 시기에 제국 차원의 인구이동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조선이 이제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일본본토와 만주 모두에서 조선인 노동력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부채에 허덕이는 선만척식회사의 인수를 요청하자 관동군은 이를 흔

19 선만척식회사와 만주척식공사의 합병 과정에 관해서는 조정우, 2016, 「국책회사로 본 국가-기업 관계의 구조변동: 만주척식공사 재편을 둘러싼 ‘反기업주의’의 정치사회학」을 참조할 것.

www.kci.go.kr

쾌히 수용했던 것이다.

만주의 관동군은 전쟁으로 인한 국면의 변화에 대응하여 만주 이민정책 및 노동력 수급정책의 재편을 위해 기존의 이민 방침을 전면 수정한 새로운 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이민 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일본-만주국 간 협의가 필요했다. 특히 이민 시행기관인 만주척식공사와 선만-만선척식회사의 통합을 위해서는 일본 제국의회의 법령 및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20] 만주척식공사는 일본-만주국의 합작 법인이자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었기 때문에 회사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를 규정한 법령을 수정해야 해야 했던 것이다. 또 통합에 필요한 회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도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은 194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1939년 초의 제국의회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이민정책 개편의 방침을 서둘러 마련하였다. 이 방침을 1938년 12월 마련하여 바로 다음 달인 1939년 1-2월에 열리는 194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국의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통과되면, 1940년부터 시행을 하려 했던 것이다.[21] 즉 1938년 12월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39년 1-2월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40년에 시행하는 프로세스였다. 이러한 과정은 만주이민정책만이 아니라 일본의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관동군에서는 이 1939년 1-2월에 열리는 제국의회의 1940년도 예산편성에 심의를 올리기 위해 그간 이민정책의 개편 방향을 정리하여 문서화하였다. 이것이 1938년 12월의 「이민근본국책결정을 위한 중요검토사항(안)」이

20 정확히 말하면, 조선총독부와 관동군은 조선의 선만척식회사는 해산시키고, 그 만주법인 자회사인 만선척식회사를 만주척식공사와 통합하려 했었다. 선만척식회사는 자금 조성만 담당했지, 실제 조직과 자산, 사업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과 부채만 서류상으로 정리하면 되었다. 조선인 이민정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실제 조직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던 자회사 만선척식회사였다.

21 滿鮮拓殖會社, 1939.01, 「移民國策決定に関する件」 중 '移民國策根本決定に関する件'의 설명(『鮮滿拓殖會社關係書類』 二冊 수록 문서, 日本國立公文書館 소장).

다.[22] 관동군사령부의 명의로 작성한 이 자료는 그간 관동군이 조선총독부, 만주국정부, 일본정부와 협의한 이민 정책 개편의 방향을 총 정리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민근본국책결정(안)」으로 약칭).

> 「이민근본국책결정을 위한 중요검토사항(안)」(1938.12, 관동군사령부)의 주요 내용
>
> 가. 일본인을 만주국의 민족협화 및 산업개발의 중핵분자가 되도록 한다.
>
> 나. 조선인 이민회사인 선만척식회사와 일본인 이민회사인 만주척식공사를 통합하여 척식사업을 일원화한다.
>
> 다. 민족협화 및 이민자 확대를 위해 민족별 차별대우와 민족간 할거의 폐해를 제거한다.
>
> 라. 이를 위해 이민지의 취득과 배분, 농업경영방식, 이민기관 및 내선인 입식과 원주민 보도 등 각 사항에 걸쳐 근본적 쇄신을 꾀한다.

「이민근본국책결정(안)」은 관동군은 일본인을 만주개발의 중추로 위치시키면서도 민족별 차별 대우를 제거하여 일본인이 아닌 다른 민족, 특히 조선인의 만주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으로 만주이민의 방향을 전환하였음을 알려준다. 이에 더해 관동군은 중국인에 대해서도 ‘보도(輔導)’를 전제로 하여 만주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간 제한해 왔던 조선인과 중국인의 만주 입국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여 만주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이민용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관동군은 그간 숙전·기경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일본인 이민용지를 확보해온 방식을 철폐하고 ‘가급적 원주민 농경지를 이민용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중국인 지주·농민과 조선인 자작농·소

---

22 關東軍司令部, 1938.12, 「(極秘)移民根本國策決定ノ為ノ重要檢討事項(案)」(『鮮滿拓殖會社關係書類』 二冊 수록 문서). 전문은 크게 1. 요지, 2. 일반방침, 3. 요령으로 나눠져 있고, 3의 요령은 다시 10개 항으로 하여 세부 사항을 두고 있다. 주요 사항의 대부분은 3.요령의 제1항인 ‘만주국측의 처치로서 검토해야 할 요항’에 제시되어 있다.

작농의 농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중국인과 조선인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 했던 것이다.

이민근본국책결정(안)에서 보듯, 국가총동원법이 선포된 1938년 만주의 관동군은 그 이전의 만주이민정책에 대한 방침을 거의 철회하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은 물론이고 중국인의 이주까지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하였다. 그런데 관동군의 이와 같은 조선인 이민 적극화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바로 1932·33년에 조선총독부의 이민정책 계획을 반대했던 '가토 그룹'이었다.

관동군은 제국의회 심의 통과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위해 1939년 1월 신경에서 '이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23] 사실 관동군에서는 이 협의회를 '간담회'라는 다소 비공식적인 성격의 자리로 마련하여 혹 있을지도 모를 반발을 무마하려 하였다. 하지만 관동군의 희망과 달리, 이시구로 타다아츠 전 농림대신, 나스 시로시 도쿄제국대학 교수, 하시모토 이에자에몬 교토제국대학 교수 등 가토 그룹의 주요 멤버들은 강경하였다. 김기훈이 초기 입안 과정을 분석할 때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일본본토의 주류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관동군의 기본 원칙인 일본인 위주의 적극적 만주이민정책을 후원하고 실행하는 동조자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을 관동군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24]

이들은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가 만주이민정책을 입안할 때 반대했던 논리를 또 다시 내걸면서 관동군에 방침 철회를 요구하였다. 가토 그룹은 만주이민의 중핵은 여전히 일본인이 되어야 하나 관동군의 방안은 일본인의 만주이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했는데, 특히 조선인 이민회사인 선만척식회사와 일본인 이민회사인 만주척식공사를 통합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였다. 이 회사들은 이민 용지와 이민 자금을 조성·배분하는 기관으로, 이 두 회사가 통합된다면 조선인과 일본인이 이민 용지 확보에 있어 경쟁 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또 이민 지원금 역시 공유된다면 일본인에게 돌

23 1939.01,「移民懇談會會議概要」(『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第2卷 수록 문서).

24 김기훈, 앞의 논문, 2002.

www.kci.go.kr

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즉 관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사업의 일원화는 만주국의 중추가 되어야 할 일본인의 만주 이주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본 본국의 농정관료, 유력 학자, 농본주의자가 결합된 이 가토 그룹의 반발로 이민국책근본결정은 연기되어 제국의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였다.[25] 관동군과 조선총독부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만척식회사와 만주척식공사의 통합은 지연되었다.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적극화한다는 관동군의 방침 역시 일시 보류되어 버린 것이다. 선만척식회사에서도 주요 주주들에게 전보를 보내 회사통합이 연기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26]

Ⅳ. 개척민으로서의 조선농민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과 조선대박람회

흔히 일본제국의 만주이민정책은 1939년 12월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 제정으로 대전환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에는 전시체제 시기 일본의 만주이민정책의 집대성으로서 이민정책의 기본 방침과 실시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27] 하지만 이 요강의 주요 내용은 한해 전인 1938년 12월에 마련된 「이민근본국책결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답습한 것으로, 관동군을 위시한 일본제국의 주요 관계 기관에서는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 이전에 이미 만주이민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근본국책결정(안)이 보류되고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이 제정될 때까지 왜 1년이라는 간격이 발생했을까.

---

25 滿鮮拓殖會社, 1939.05, 「開拓(舊稱移民)國策決定に関する件」(『鮮滿拓殖會社關係書類』 二冊 수록 문서). 이 문서는 만선척식회사 감사가 대주주인 동양척식회사의 이사에게 회사 통합 연기를 알리고 그 사유를 설명한 극비 전보이다.

26 滿鮮拓殖會社, 위의 문서, 1939.05.

27 이 글에서 참고한 것은 『鮮滿拓殖會社關係書類』 二冊에 첨부되어 있는 「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 인쇄본이다.

www.kci.go.kr

1.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의 제정과 제국의회 심의

1939년 12월 제정된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은 앞의 「이민근본국책결정(안)」과 마찬가지로 한달 뒤인 1940년 1-2월에 열리는 제국의회에 법령 개정과 1941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요강이 제정·발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이민정책이 전환되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제국의회 심의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심의에 올리지 못하거나, 혹 올리더라도 의회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은 폐기되고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근본국책결정(안)」때와 달리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은 사전 협의에서 좌절되지 않고 제국의회 심의에 상정되는 데 성공하였다. 제국의회 의장은 의회 내에 '임시만주개척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 심의회는 제국의회 회기 중인 1940년 2월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심의회 총회의 의장은 조선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척무대신 고이소 쿠니아기였다. 고이소는 1934년 조선총독부의 만주이민정책을 지지했던 바로 그 때의 조선군사령관이었다. 고이소 척무대신의 사회로 열린 심의회 총회에서 이시구로 전 농림국장은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 중 특히 이민회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 1년 전 신경 이민간담회의 토론까지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심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 고이소는 이민회사 통합 문제 논의를 위한 특별분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특별분과에는 다나카 다케오 전 총독부 외사과장이 척무성 척무차관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다나카 척무차관은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 입안 당시 담당 부서였던 외사과의 과장으로서 정책의 입안과 실행의 실무 최고 책임자였다. 경찰 출신으로서 다나카 외사과장은 북부 조선지역과 재만조선인사회의 사정에 대해 매우 밝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주이민정책의 실무를 맡았었다. 이 공로덕택에 곧 조선총독부 경찰국장으로 승진하였다. 그 뒤 고이소 조선군사령관이 본국의 척무대신으로 영전할 때, 그의 추천을 받아 척무

www.kci.go.kr

차관으로 척무성에 입성하였다.[28] 이렇게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전모를 모두 알고 있는 다나카 전 조선총독부 외사과장이 나와야 할 정도로 이시구로 전 농림국장의 반발은 강경하였다.

이시구로 전 농림국장의 비판은 만선척식회사와 만주척식공사의 통합 문제에 집중되었다. 한해 전의 이민간담회에서 제기한 것처럼, 두 이민회사의 통합은 만주국의 중핵이 되어야 할 일본인의 만주이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논지였다. 만주척식공사가 만선척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조선인 이민까지 취급한다면, 일본인 이민 사업에 대한 만주척식공사의 지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만주이민정책이 국책으로까지 격상된 시점에서, 그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였다. 게다가 여태 일본인 이민과 조선인 이민은 이민 용지의 선정에서나 토지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에 있어서나 차등적인 지원 조건 하에 있었는데, 통합 후 이를 동일하게 하지 않는다면 차별만 더 부각될 것이라 하였다. 또 만약 지원을 동일하게 하려 할 경우 일본인 대출 이자율 연 6%와 조선인 이자율 연 12.6%의 간격을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 그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를 묻기도 하였다. 그는 만약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역시 민족 간 차별이 아닌가 하고 힐난하였다. 그는 민족별 할거를 제거한다는 관동군의 방침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차등 조건으로 한다면 도대체 왜 회사를 통합하는지를 되물은 것이다. 이시구로는 회사의 통합은 오히려 조선인 차별만 부각시켜 만주이민정책 재편의 근본 취지를 도리어 해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편 셈이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척무차관은 이민 기구와 정책의 일원화는 오족협화에 기여한다는 등 이민정책의 명분만 되풀이 할 뿐, 이시구로의 질문에 대해 효과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이시구로는 오족협화와 만주개발을 위해 이민

28 당시 일본의 관료기구는 장관-차관-국장-과장의 구조가 아니라 대신-국장-과장의 구조였기 때문에 차관이 지금과 같은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척무차관’은 척무대신 바로 밑의 직위가 아니라 척무성에서 조선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는 직위를 그 자체를 가리키는 직명이었다.

www.kci.go.kr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말이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은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까지 하며 다나카의 답변은 물론이고 관동군의 명분까지도 맹공격하였다. 다나카는 회사 통합의 이유를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단지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은 일본본토의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당시 일본정부에서도 동의한 바이며, 그것이 선만척식회사 설립의 근본 의의였다고 답변하여 이시구로의 맹공을 회피하였다.[29]

결국 심의회 특별분과에서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결렬되었다.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 투표까지 결행한 끝에 반대 2표를 제외한 다수의 찬성으로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은 의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1940년 제국의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만주이민정책의 허구성과 속내(本音)였다. 조선인 만주이민정책은 결코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본국을 위한 것이었고, '민족협화'를 위해 이민정책을 일원화하고 회사를 통합한다는 관동군의 목적도 허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2. 만주개척의 프로파간다: 조선대박람회 만주개척민관 설치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은 중일전쟁이 장기전으로 번진 1938년 봄부터 진행된 만주이민정책 재편의 결과물이었다. 약 2년의 줄다리기 끝에 전시체제 기 일본의 만주이민정책의 기본 성격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 핵심에는 일본인-조선인-중국인이 전쟁수행과 만주국 경제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조선에서는 '내선일체', 만주에서는 '오족협화'가 만주 이민자 사회의 통합을 위한 슬로건으로 내걸렸다. 임성모가 지적한 것처럼,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는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만주이민정책에서는 양자가 거리낌 없이 병용되었다.[30]

조선인 이민을 일본인 이민에 준하는 것으로 약속한 만주개척정책기본요

29 이상 심의회 특별분과의 회의 내용은 「臨時滿洲開拓政策審議會速記錄」(『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第3卷)을 참조하여 구성.

30 임성모, 앞의 논문, 2009.

www.kci.go.kr

강의 제정·시행으로 만주이민정책에 있어 조선인은 원리상으로는 일본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일본인 이민자들을 ‘개척민’으로 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인 이민자들도 똑같이 ‘개척민’ 칭호를 부여 받았다. 만주국의 오족협화와 개발을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은 ‘내선일체’하여 만주의 농토를 ‘개척’한다는 상이었다.

1936년 일본본국과 만주국의 외면 속에 창설된 선만척식회사는 1941년 마침내 일만 양국이 합동으로 지원하는 만주척식공사로 합병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모회사인 선만척식회사는 해산하고 만주 사업 자회사인 만선척식회사는 만주척식공사에 통합되어 조선인 이민정책을 계속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선만척식회사는 설립 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음에도, 회사 임직원들은 불과 5년만 존속한 회사의 사사(社史)를 편찬하고 또 개척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해산 직전까지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얼핏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일지 모르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총독부와 선만척식회사 입장에서는 통합을 통한 회사의 해산이 오히려 조선인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선만척식회사의 창설은 조선-일본-만주 간 타협이 낳은 조선총독부의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이다.[31]

선만척식회사의 해산을 1년 앞 둔 1940년 9월 조선에서는 ‘조선대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조선대박람회는 ‘기원2600년’과 조선총독부 ‘시정30주년’ 기념을 명분으로 내걸고 경성일보사가 주최한 대형 박람회였다. 박람회는 통상 산업 전시와 지역 전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박람회는 산업관, 지역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전쟁과 무훈을 기념하는 전시관을 대거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는 식민주의 기획이 주도한 조선물산공진회(1915년)와 조선박람회(1929년)와 달리 전쟁이 강조된 박람회였다.[32] 그래서 조선총독부만이 아니라 조선군사령부도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

31 김기훈, 앞의 논문, 2002; 조정우, 앞의 논문, 2014.

32 Todd Henry, 2008, 「제국을 기념하고, 전쟁을 독려하기: 식민지 말기(1940년) 조선에서의 박람회」, 『아세아연구』 134호, 78~81쪽.

www.kci.go.kr

경성부 마장정(馬場町)의 넓은 부지에서 열린 조선대박람회는 경성일보의 대대적인 선전 속에서 성황을 이뤘다. 경성역전에는 대형 환영문이 설치되었고, 남대문에는 대형 현판이 내걸렸다. 박람회장의 중심부에는 '팔굉일우(八紘一宇)'가 새겨진 탑이 설치되어 이목을 끌었다.

그림1. 조선대박람회장 입구의 인파(좌), 전시를 참관하는 조선총독과 조선군사령관(우)

출처: 京城日報, 1940,『朝鮮大博覽會の概觀』.

선만척식회사는 이 박람회에 만주개척에 관한 전시를 '만주개척민관'이라는 이름으로 출품하여 참여하였다. 박람회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쟁'을 주된 테마로 한 조선대박람회에 선만척식회사는 '개척'을 내세워 전시장의 한 면을 차지했던 것이다. 조선대박람회는 성전(聖戰), 무훈, 팔굉일우와 같이 전쟁기 일본을 표상하는 문자들이 난무했다. 개척 역시 그러한 것이었다.

선만척식회사의 만주개척민관은 만주 현지의 개척촌을 재현한 야외전시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아래 그림2를 보면, 왼쪽 감시탑 모형과 오른쪽 전시관 사이에 농가주택이 살짝 보이는데, 이곳이 개척촌 야외전시장이다. 사진 앞 쪽의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트랙터로 보인다. 반대편에서 촬영한 오른쪽 사진에서는 감시탑에 일장기와 만주국기가 나부끼고 있고, '만주개척민풍경'이라는 야외전시장 명칭도 보인다. 이 두 사진은 선만척식회사의 전시가 개척촌, 감시탑, 트랙터라는 만주 개척 장면의 세 요소를 배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ww.kci.go.kr

그림2. 만주개척민관의 외부와 개척촌을 재현한 야외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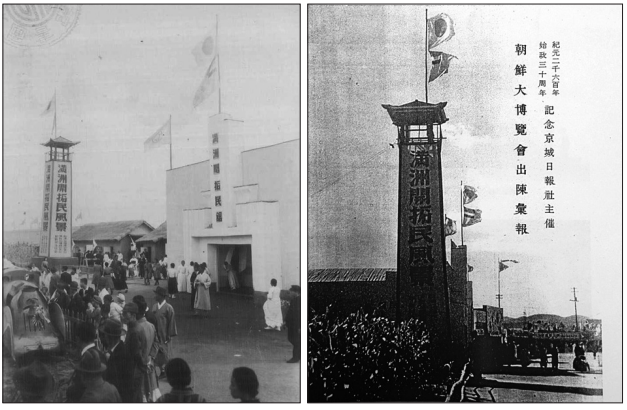

출처: 좌) 京城日報, 1940,『朝鮮大博覽會の概觀』, 우) 鮮滿拓殖, 大陸の開拓と半島同胞, 1941

이제 만주개척민관의 내부로 들어가 보자. 조선대박람회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아 전시품의 목록, 구성의 목적 등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전시관 내부의 모습은 박람회의 공식 기념지인『조선대박람회의 개관(朝鮮大博覽會の概觀)』(경성일보, 1940)에 실린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엿볼 수 밖에 없다. 아래 사진의 왼쪽은 만주개척민관의 전시 모습이다. 일본-조선-만주가 함께 나와 있는 지도와 개척민들의 농기구, 그리고 현지 사진을 걸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패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 사진의 맨 왼쪽에는 개척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전시물이 있는데, 이는 선만척식회사가 만주개척 홍보용으로 편찬한『대륙의 개척과 반도동포(大陸の開拓と半島同胞)』(1941)에 크게 확대되어 실려 있다(그림 3의 오른쪽 사진).

www.kci.go.kr

그림3. 만주개척민관 내부 전시 광경과 개척민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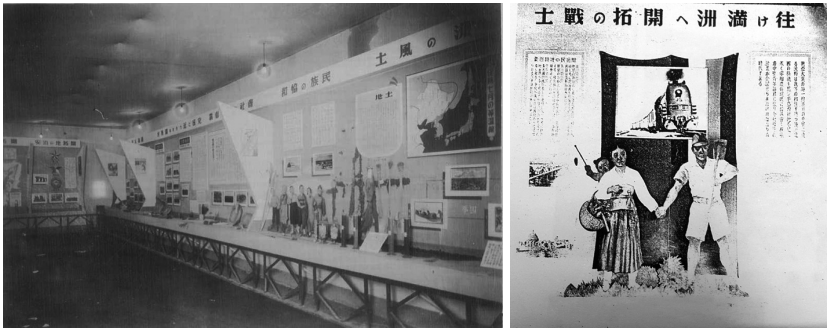

출처: 좌) 京城日報, 1940,『朝鮮大博覽會の概觀』, 우) 鮮滿拓殖,『大陸の開拓と半島同胞』, 1941

"가라 만주에, 개척의 전사"라는 표제가 붙은 이 전시물에는 만주 개척의 표상이 집약되어 있다. 대형 만주국기가 세로로 걸려 있고, 그 가운데에는 만철의 특급열차가 대지를 가로지르고 있다. 만주국기와 만철을 배경으로 그 앞에는 아이를 등에 업은 개척민 부부가 손을 잡고 서 있다. 남성은 전형적인 개척민 여름 복장을 하고 왼어깨에 개척농민의 상징인 가래를 메고 있다. 당당하게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대단히 강건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남성의 모습은 개척민의 전형으로 일본인 개척민 남성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부인은 치마저고리 복장에서 조선인 여성임을 쉽게 알 수 있다.[33]

이 개척민 가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일본제국은 조선인들에게 "개척의 전사"로서 만주로 갈 것을 권유했다. 선만척식회사는 조선인을 개척민으로 호출하기 위해 '만주개척민의 밤'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프로파간다가 효과가 있었는지 1940·41년 조선에서는 만주국 건국 직후 불었던 '만주붐'이 다시 불어왔다.

33 오른발을 살짝 들어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탓에 남편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www.kci.go.kr

V. 나오며: 불령선인에서 개척전사로

이 글은 19세기 중엽부터 본격화된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1938년 이후 전시체제의 전개 속에서 ‘개척’이라는 칭호와 의미를 부여받게 된 역사적 과정을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일본제국에 있어 식민지·점령지 등 세력권으로의 이주는 ‘이민-식민-척식-개척’이 국면에 따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홋카이도 ‘내국식민화(內國植民化)’에서부터 대만·조선 식민지배에서도 중층적 혼용이 있었다. 홋카이도에서는 담당 관청으로 개척사(開拓使)가 설치되었고, 개발을 위한 국책금융기관으로 홋카이도척식은행(北海道拓殖銀行)이 설립되었다. 대만에 대해서는 농업이민이 추진되었고, 조선에는 이민회사로 동양척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만주 이주의 경우 1930년대 전반까지는 만주 이민, 만주 척식 등으로 불리다가 전시체제 하인 1939년 무렵부터 만주 개척으로 불렸다.

‘불령선인’의 온상으로 의심받던 조선인의 만주 이주 행위가 이민을 넘어 개척으로 ‘격상’된 것은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을 정점으로 만주이민정책에 있어 그간의 차별을 철폐(‘內鮮一體’)한다 했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인 이민자가 개척민이라면 조선인 이민자에게도 똑같이 개척민의 위상을 부여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개척의 전사’라는 선전의 이면에는 철저한 제국본위의 정치적 목적이 관철되고 있었다. 1930년대 만주이민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제국의 이익과 국방이라는 목적 속에서 때로는 억제되고 때로는 장려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전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개척’의 프로파간다를 넘어 ‘전시동원’으로 또 다시 강화·변용되었다.[34]

34 이 전시동원으로서의 만주 이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과정과 성격을 분석해 볼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1차자료

朝鮮軍參謀長, 1936.09,「滿洲國二対スル朝鮮人移民二関スル件」(國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關東軍司令部, 1938.07,「在満朝鮮人指導要綱(修正)並鮮農取扱要綱に関する件」(國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鮮滿拓殖會社關係書類』二冊 (國立公文書館 筑波分館).

『滿洲移民關係資料集成 第2卷 (第1編移民政策関係会議録類 4·5)』, 1990, 不二出版.

『滿州移民関係資料集成 第3卷 (第1編移民政策関係会議録類 6·7)』, 1990, 不二出版.

『朝日新聞 南鮮版』1937年

『朝日新聞 西北鮮版』1938年

2. 연구논문 및 저서

유원숙, 1995,「1930년대 日帝의 조선인 만주 이민정책 연구」,『釜大史學』19

孫春日, 1999,『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硏究』, 백산자료원

김기훈, 2002,「일제하 '만주국'의 이민 정책 연구 시론 - 일본인 이민 '장려' 조선인 이민 '통제' 정책 형성의 배경」,『아시아문화』18

임성모, 2009,「만주농업이민정책을 둘러싼 관동군 조선총독부의 대립과 그 귀결」,『일본역사연구』29

김윤미, 2010,「일제의 '만주개척' 정책과 조선인 동원」,『한일민족문제연구』17

정안기, 2011,「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주)」,『동북아역사논총』31

金永哲, 2012,『「滿洲國」期における朝鮮人滿洲移民政策』, 京都: 昭和堂

조정우, 2014,「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선만척식회사 설립 경위를 중심으로」,『사회와 역사』103

조정우, 2016,「국책회사로 본 국가-기업 관계의 구조변동: 만주척식공사 재편을 둘러싼 '反기업주의'의 정치사회학」,『만주연구』21

이동진, 2016,「[서평] 국가, 문화를 만나다:『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한석정 저」,『만주연구』22

www.kci.go.kr

Todd A. Henry, 강동인 역, 2008, 「제국을 기념하고, 전쟁을 독려하기: 식민지 말기 (1940년) 조선에서의 박람회」, 『아세아연구』 134

투고일: 2020년 10월 14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31일

www.kci.go.kr

■ Abstract ■

War and Pioneer: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to Manchuria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CHO, Jung 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reorganizing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to Manchuria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By 1937, the Kwantung Army had suppressed Korean migration to Manchuria and changed its immigration policy to secure the labor force needed to carry out the war. With this policy change, society's perceptions of Korean immigrants went from anti-Japanese suspects to pioneers of a new empire. In this paper, I trace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Japan-Korea-Manchu with a focus on these states' immigration policies in Manchuria and analyze the process and logic of policy change.

Keywords: Manchuria, Immigration policies, Korean migration, Kwantung Army, Anti-Japanese, Korean Pioneers

www.kci.go.kr